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정	2009. 06. 24.
개정	2010. 07. 14.
개정	2010. 12. 31.
개정	2011. 03. 15.
개정	2011. 03. 24.
개정	2011. 08. 3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2. 07. 05.
개정	2012. 10. 29.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04. 02.
개정	2014. 09. 30.
개정	2015. 04. 27.
개정	2015. 11. 26.
전부개정	2016. 02. 19.
개정	2016. 03. 09.
개정	2017. 02. 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및 문화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문화부 보조금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원금(간접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출연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을 제외한 콘텐츠 “지원사업”은 보조금법에서 정의된 “간접보조사업”을 말함)
〈개정 2016.2.19.〉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전담기관”은 보조금법에서 정의된 “보조사업자”를 말함) 〈개정 2010.12.31.〉 〈개정 2016.2.19.〉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주관기관”은 보조금법에서 정의된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함) 〈개정 2016.2.19.〉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참여기관”은 보조금법에서 정의된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함) 〈개정 2016.2.19.〉
5.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문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조항신설 2015.4.27.〉
6.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콘텐츠지원 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6.2.19.〉
7.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 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6.2.19.〉
8.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지원금”은 보조금법에서 정의된 “간접보조금”을 말함) 〈개정 2016.2.19.〉

10. “지원금” 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원금” 은 보조금법에서 정의된 “간접보조금” 을 말함) <개정 2016.2.19.>
11.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중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제외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현금과 현물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개정 2010.12.31.> <개정 2016.2.19.>
12. “기술료” 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술 개발사업의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 (보조사업자)의 장이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 보조사업자)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9.>
13. “사업관리자” 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1조(업무의 위탁 등)의 사업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사업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사업관리자를 의미한다. <조항신설 2014.4.2.>
1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익” 이라 함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을 말한다. <개정 2016.2.19.>
15.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이라 함은 지원금(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2.19.>
16. “간접보조사업자” 이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2.19.>
17. “민간단체” 라 함은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를 수행하는 민간단체·민간법인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9.>
18. ‘부정수급’ 이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 <신설 2016.2.19.>

19. ‘별도 계정’ 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지원금(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6.2.19.>
 20. ‘정산’ 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2.19.>
 21. ‘검증’ 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2.19.>
 22. ‘검증기관’ 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9.>
 23. “보조금수령자”란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및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6.2.19.>
-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법, 통합지침 및 문화부 보조금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2.1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정책지정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 관한규정의 일반적인 수행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문화기술연구개발(R&D)분야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2.7.5.> <개정 2016.2.19.>

제4조(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참여제한 대상을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③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공정한 선정 및 지원금의 적절한 사회적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를 수행하는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02.02.>

제5조(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선정)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정책지정,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및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일정비율을 지역의 주관·참여 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배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4.4.2.> <개정 2016.2.19.>

제 2 장 전담기관의 업무

제6조(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업무)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19.>

1. 지원금(간접보조금) 등의 관리
2. 콘텐츠 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지원금(간접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 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및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보조사업자)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③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2.19.>

제8조(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①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16.2.19.>

1.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중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간접보조사업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 시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③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16.2.19.>

1.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에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16.2.19.>

1.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 3 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0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및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2.19.>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11조(과제의 신청) ①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2조(과제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제15조의 규칙에 의하여 선정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신청시 제33조 내지 제40조의 규칙에 의한 기술료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기술료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13조(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제7조의 규칙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과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6.2.19.>

④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 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14조(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5조(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선정 확정)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6조(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확정 통보 등)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 결과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개정 2017.02.02.>

제 4 장 협약체결 등

- 제17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이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과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별로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③ 국고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이를 자체 부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개정 2015.4.27.> <개정 2016.2.19.>
- ④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⑤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2.19.>

제17조의2(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 ① 지원금(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7조제2항의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②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지원금(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별표3에서 정한 양식(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③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4호의 서류 제출시기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1. 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신청서
2.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
3. 지원금(간접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4.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해당사업에 한함)
5.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확약서(해당과제에 한함)
6. 기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2.19.>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2.19.>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제41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간접보조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콘텐츠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 5 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① 사업비의 비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 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3의 목·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세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콘텐츠제작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간접보조금)으로 인건비 편성이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신설 2015.4.27.> <개정 2016.2.19.>

③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금(간접보조금)으로 인건비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5.4.27.> <개정 2016.2.19.>

제21조(지원금(간접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에게 제17조의2(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에 따른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원금(간접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간접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원금(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및 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이 제출한 교부신청서류 및 사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관리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개정 2016.2.19.>

③ <조항삭제 2010.12.31.>

④ <조항삭제 2010.12.31.>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교부결정 통보) 시 사업자부담금이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자부담금 확약서와 사업비 통장사본을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자부담금 확약서와 사업비 통장사본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9.>

⑥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평가(사업추진 수행상황 보고 등) 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자부담금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비 통장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야하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통장 사본을 확인 후 지원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영세하거나 사업의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로 사업자부담금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9.>

제22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금(간접보조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며 사업비의 관리·사용 · 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22조의2(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집행)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으로 하여금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1.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의 경우
2.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과제인 경우

제22조의3(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로 발생한 수익금) ① 전담기관

(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으로 그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거나,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부조건에 포함하여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②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교부조건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거나 해당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목적범위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에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9.>

제22조의4(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용)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교부된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으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②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으로부터 지원금(간접보조금)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③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송부한 사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간접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④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제22조의5(보조사업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제22조의4제2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지원금(간접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 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②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③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제22조의6(보조사업 카드의 사용 및 제한)** ①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지침 별표3의 목·세목 내역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맞게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②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지원금(간접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지침 별표5의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별표5의 자율적용 제한업종에 대하여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 ③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지침 별표5의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2.19.>
- ④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지원금(간접보조금) 집행 시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19.>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및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 ⑥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제22조의7(지원금(간접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①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금(간접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금(간접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②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지원금(간접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③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제1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지원금(간접보조금) 집행상황 및 목·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별로 월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신설 2016.2.19.>

④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23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간접보조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발생이자를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개정 2016.2.19.>

② <조항삭제 2010.12.31.>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시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 집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9.>

제24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19.>

제 6 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5조(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별로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26조(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 및 책임자는 제17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27조(과제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과제(간접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또는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제1항의 과제결과요약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28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과제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전1항의 과제의 중간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카드의 사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2.19.>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2.19.>

④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원금(간접보조금) 반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30조(발표회 개최)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으로 하여금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31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보조사업자),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6.2.19.>

③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소유하는 기자재, 시설 등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2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9.>

④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2.19.>

제31조의2(중요재산의 보고) ①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다음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중요재산 취득 후 7일 이내에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에게 보고하고 반기별로 변동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이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6.2.19.>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19.>

④ 제2항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2.19.>

제31조의3(재산 처분의 제한)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해당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를 완료한 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19.>

1.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1.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금 및 지원금(간접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간접보조금(지원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및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제4항 및 제41조 제2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④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제31조의4(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자치단체 등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19.>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③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⑤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 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 7 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채권심의위원회 등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의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및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료는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한도로 사업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24.> <개정 2014.9.30.> <개정 2016.2.19.>

② 기술료는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납부대상이 되며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서 제출한 성과 보고서(매출자료 포함)를 토대로 기술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4.4.2.> <개정 2014.9.30.> <개정 2015.11.26.> <개정 2016.2.19.>

③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개정 2016.2.19.>

1.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4.9.30.>
2.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또는 초·중등교육법 의한 고등학교 등
3.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
5.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 한다. <개정 2016.2.19.>

1. 1인 이상 정규직 신규 채용의 경우

2. 50만 달러(한화 5억 원) 이상의 수출 달성 시 <조항신설 2014.9.30.>

제34조(채권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금(간접보조금)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권심의위원회(이상 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채권심의위원회의 제반 규칙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관리의 종결)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기술료에 대한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채권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제36조(기술료의 사용 등)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 계획 수립 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그 용도를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37조(기술료의 관리)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잔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기술료를 일시 체납하는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환수대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납부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일시 납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개정 2016.2.19.>

제38조(기술전수)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 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39조(지원금(간접보조금) 채무 보증 징구 등)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회수별 지원금(간접보조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과제수행자(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개정 2013.12.31.>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및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제33조제3항의 기술료 징수 면제대상 기관인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개정 2010.10.29.> <개정 2016.2.19.>

③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수의 지원금(간접보조금)이 과제 최종종료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간접보조금)에 대해 과제수행자(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9.>

④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총 사업비(지원금(간접보조금) 및 자체부담금(자부담금))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개정 2013.12.31.> <개정 2016.2.19.>

- ⑤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과제 평가 결과가 합격이고 정산이 완료되어 정산잔액이 최종 회수된 과제에 한하여 과제수행자(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해당 과제의 이행완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3.12.31.> <개정 2016.2.19.>
- ⑥ 보증기간 내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 수수료 환급 금액은 총사업비(지원금(간접보조금) 및 자체부담금(자부담금)) 협약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배분된 국고부분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3.12.31.> <개정 2016.2.19.>

제 8 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적용 등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삭제 2017.02.02.>

제 9 장 보 칙

제41조(제재조치) ① <삭제 2016.2.19.>

- ② <삭제 2016.2.19.>
- ③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에 따라 보조사업 및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수급제한,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참여 시 감점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41조의2(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법」 제33조의2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신설 2016.2.1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 ⑥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제41조의3(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신설 2016.2.1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보조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전담기관(보조사업자),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전담기관(보조사업자),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⑥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수령자가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 대상인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제42조(비밀준수)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및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2.19.>

제43조(적용 특례)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부 칙(2009.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착수된 지원 과제의 경우 제20조(사업비의 산정 기준 등),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수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규칙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1.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4.)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신설 2011.3.24.>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2.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4.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4.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재부가금(제41조의2) 및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제41조의3) 관련 조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한다.

부 칙(201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7.0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별표1] <삭제 2016.2.19.>